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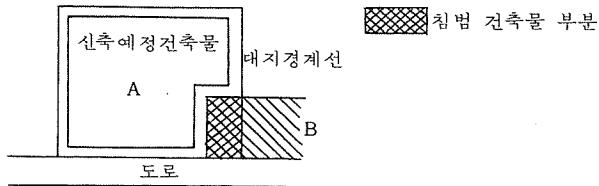
건축행정 / 질의응답



□ 시·도지부 문의

■ 건축법 제41조 2(대지안의 공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띠어서 건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림과 같이 B 대지의 기존 건축물이 신축하고자 하는 A 대지를 침범하고 있을 경우에 대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소정거리 확보 여부?

(충무분소)



■ ① 기존건축물(B)이 준공당시 적법한 경우라면 A 및 B 건축물 별로 대지 경계선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A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대지를 분할하여야 할 것이며,

② 기존 건축물(B)이 위법 건축물일 경우라면 당해 시장·군수가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철거 또는 대지의 추가 확보 등으로 동 건축물이 적법한 상태가 되도록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설부)

■ 각층 바닥면적이 $1000m^2$ 이하이고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방화구획의 충별 구획 여부와 각층 바닥면적이 $1000m^2$ 이상인 지하 1층 지상 3층인 경우 방화구획 방법의 여부?

(제주지부)

■ 건축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m^2$ 를 넘는 경우는 3층 이상의 모든 층과 지하층은 1개층의 바닥면적이 $1000m^2$ 이하라도 각층마다 방화구획을 해야 하고, 1·2층은 합계 $1000m^2$ 이내마다 구획을 하여야 합니다.

(기술부)

■ 건축법 시행령 제175조 제3항에 규정한 높이 4m가 넘는 광고판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공작물로 규정하고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의 외벽에 부착되는 돌출 간판도 광고판으로 간주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서울회원)

■ 건축물의 외벽에 부착되는 4m 이상 높이의 돌출 간판은 광고판으로 간주되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기술부)

■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였으나 당초 허가면적보다 면적을 증가하여 건축했고, 그후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받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로서 허가면적 보다 증가된 부분의 용도 지역 및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별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 조치 후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

(서울회원)

■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허가 사항의 위반에 대하여는 행위자 처벌, 건축물에 대하여는 증축허가등의 조치를 선행한 후 이에 대한 준공검사 등 적법한 치유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건설부)

■ 건축법 시행령 별표2 제7항 관람집회시설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이라 함은 객석과 연단(무대)

을 포함한 면적인지 아니면 객석과 통로만을 포함한 면적인지의 여부?

(전북지부)

【답】건축법 시행령 별표 2 제 7 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집회 시설의 바닥 면적 산정시에는 연단(무대)의 면적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건설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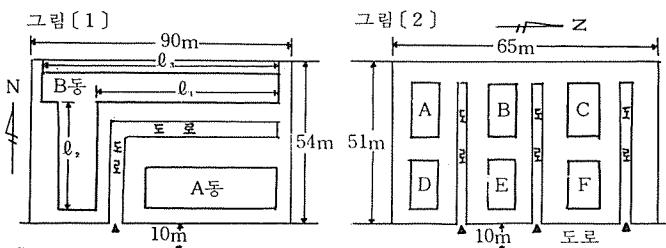
【문】①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소의 설치에 있어 그 위치상의 규정이 없는 바 대지 이용상 관리 사무소를 지하에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② 동 규칙 제3조 제1항에서 “공동주택 1동의 길이는 120m이하이고”의 경우 그림 [1]의 아파트 B동에서의 전물 길이를 ℓ, 으로 적용함이 타당한지의 여부?

③ 동 규칙 제14조 제1항의 진입도로와 제2항의 단지 안의 도로의 한계점 구분에 대하여 그림 [1]에서 진입도로, 주된도로, 부도로의 구분은 부도로서의 적용여부?

④ 그림 [2]와 같은 경우 아파트 배치 계획상 단지 안의 도로 부분은 부도로로 사료되는 바 귀결 여부?

(경북지부)



【답】① 공동주택 단지 내의 관리사무소는 지하에 설치가 가능하며

② 공동주택의 길이는 평면상 장면의 길이를 말하므로 질의의 경우 전물의 길이는 ℓ, 으로 볼 수 있으며

③ 진입도로, 주된도로 및 부도로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바

- 진입도로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 접하거나 동 단지로의 인입도로는 도시계획 도로 또는 주택건설 사업으로 건설하는 도로

- 주된도로 : 폭 12m 이상인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단지 내의 도로이거나, 당해 주택단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 이외의 일반인의 교통도로로 이용되는 단지 내의 도로

- 부도로 : 주된도로 이외의 단지 내의 도로

이므로 질의 ③의 경우 진입도로 1개 설치할 경우의 폭에 맞아야 하며 질의 ④의 경우는 부도로로 간주합니다.

(건설부)

【문】건축사 업무 보수 기준 제18조에 의하면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소정의 보수기준이 정하여 있는바 본조에 의거 실시설계가 미정인 계획설계(배치도, 평면도) 도서만으로도 도서신고 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전북지부)

【답】설계도서의 신고는 건축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건축허가 신청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법취지로 보아 계획설계만은 도서신고 할 수 없습니다. (기술부)

【문】외국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을 국내 건축사 명의로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로 하여 도서신고가 있을 때 신고수락이 가능한지의 여부?

(경북지부)

【답】건축사는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만 건축사 업무가 가능한바 귀 질의의 경우는 면허증의 부당행사에 속할 뿐더러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도서신고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기술부)

【문】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서 공동 대표제로 되어 있는 경우, 공동대표의 1인만이 건축사이면 법인 명칭으로 건축사 사무소 등록이 가능한지의 여부?

(서울지부)

【답】공동대표로 설립된 법인이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할 시에는 공동대표 모두가 건축사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건설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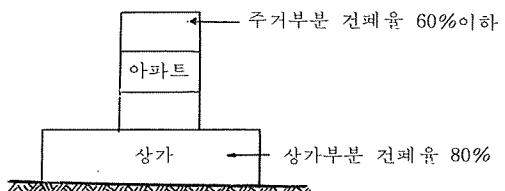
【문】상업지역 내 방화지구 안에서 1층은 상가를, 2층부터 5층까지는 아파트를 건축코자 하는바 건폐율을 1층에는 80%, 2층부터 5층까지는 60%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서울회원)

【답】① 건축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므로 하나의 건축물에 2개 이상의 건폐율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상업지역 내 방화지구 안에서 주거용 건축물과 공업용 건축물의 건폐율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10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②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 건축물에 주거용과 타용도가 겸용되었을 경우에는 주거용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1/2미만인 경우에는 동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건설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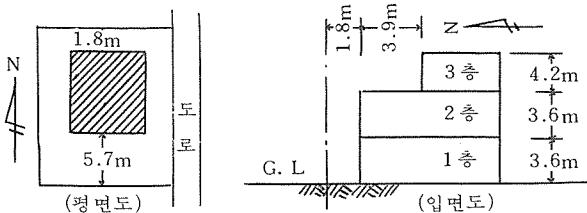


① 상가의 바닥면적이 주거용 바닥면적보다 클 경우?

② 상가의 바닥면적이 주거용 바닥면적보다 작을 경우?

【문】건축법 시행령 제167조의 규정 적용에 있어 동법시행 ('76. 4. 15. 대통령령 제8090호) 이후 허가를 득하여 준

공된 2층 건물로서, 위 규정에 적법하게 정북방향은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건물높이 (7.2m)의 수평거리가 1/4 인 (1.8m) 전물 - 3층부분만 건물을 증축할 경우 3층부분에 대해서는 정북방향의 인접대지의 경계로부터 (기존 건물 높이 7.2m + 증축건물 높이 4.2m) 전체 건물높이의 1/2에 해당하는 수평거리 (5.7m)를 두고 증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결 여부? (서울회원)



① 건축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정남 및 정북방향에 있어서 8m 이상인 건축물은 각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 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에 상당하는 높이이하로 하고, 8m 이하인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하여야 할 것인바,

② 다만, 건축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동 시행령 제1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현행 규정에 적합하면 그 증축을 허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법 시행령 시행 ('76. 4. 15.) 이전의 기존 건축에 대하여는 증축으로 인하여 위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축하고자 하는 각 부분의 높이가 위 규정에 적합하면 증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건설부)

③ 건축사법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의 등록취소 처분이나 폐쇄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건축주로부터 위탁계약 해지 요구가 없을 경우 처분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할 수 있는바

④ 자진폐업인 경우에도 동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수 있는지의 여부와

⑤ 위 규정을 준용받지 못할 경우에 건축사 2인이 합동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면 중 1인이 자진 폐업하므로서 나머지 1인 역시 본의 아니게 자진 폐업된 경우 기 계약분에 대한 처리 여부? (전북지부)

⑥ 자진 폐업인 경우는 건축사법 제22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2인 합동 사무소인 경우 1인이 폐업을 하면 나머지 1인은 단독 사무소로 하여 등록사항변경이 선행되어야 할것이고, 합동업무를 계속 유지하려면 다른 1인과 새로운 합동 사무소 등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술부)

⑦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영업의 종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 주점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부표 제4항의 근린생활 시설 또는, 제14항의 위락시설 중 어느곳

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제주지부)

⑧ 질의의 경우 간이주점은 건축법 시행령 부표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의 용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부)

⑨ ① 주거지역 안의 대지면적 234.92m²에 86.65m²의 주택을 건축한 후 2층에 66.75m²의 증축허가를 득하여 현재 시공중인 대지내에서 별동으로 17.28m²의 취사장을 증축할 경우 신고로서 처리할 수 있는지 또는 설계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② 역시 주택 신축을 허가 받아 시공중 별동으로 23.8m²를 증축신고를 필하여 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단, 건폐율은 지역 조건에 적합함)

③ 주택허가 개선책에 의하여 부속건물 3m² 증축을 묵인하였다 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당하였을때 위법 건축물로 보고를 해야 하는지의 여부? (강원지부)

④ 귀질의 ① ②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며,

질의 ③에 대하여는 귀 질의와 같이 3m²의 증축을 묵인한 경우 보고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부)

⑤ 자연인이 아닌 법인체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가 건축주가 되어 다음과 같은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 건축법 시행령 부표의 용도분류에 대한 질의 사항입니다.

① 사택은 일반적으로 법인체의 후생 복지 시설로 1가구 수용의 개념으로 단독주택이라고 사료되어 부표 제1항의 유사 용도인 사택으로의 표기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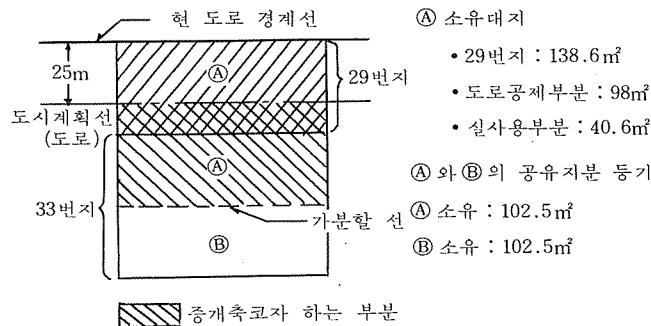
② 법인체 (사회단체)에서의 생활관은 필요한 재반 행사나 기타의 목적으로서 꾸며진 주거 환경이나 시설물로 기숙사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 분류 여부? (예: 00학교 생활관, 00교회 생활관 등)

③ 비영리 종교 단체에서의 목사관은 목사가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인바 기능적 개념으로는 부표 제1항의 단독주택에 해당되고 공적 개념으로는 공관에 비유되므로, 건축허가시의 용도분류를 목사관으로 표기할수 있는지의 여부? (서울지부)

④ 건축법 시행령 부표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상의 "사택"은 "단독주택"으로 "생활관"은 "기숙사"로, "목사관"은 "단독주택"으로 용도 분류 될수 있습니다. (건설부)

⑤ ① 개발 제한 구역내의 그림과 같은 대지가 (29번지)도시계획선으로 인하여 공제부분 이외의 대지는 협소하여 건축이 불가함으로 ④와 ⑤의 공유지분 등기 대지 (33번지) 중 ⑤가 거주중인 102.5m²를 제외한 잔여대지와 ④의 도로공제 잔여분인 40.6m²를 합한 143m²에 29번지 상의 기존 건물을 증개축 (29번지와 33번지에 걸쳐)코자하는데 건축이 가능 한지의 여부?

② 위의 사항이 불가하다면, 개발 제한 구역내의 도로 계획 선내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경남지부)



■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라함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하나의 필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유관계가 서로 상이한 2 이상의 필지는 하나의 대지로 보지 아니 하므로 건축이 불가하며 개발 제한 구역내 가설건축물의 건축은 본건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건설부)

■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대지의 여유공지에 지하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었던 바 용량 미달로 지상 2.4m 높이로 (면적 약 3.0m²) 추가 설치할 경우에 따른 건축면적 및 건폐율의 적용 여부? (경남지부)

■ 키 질의의 경우 지상 2.4m 높이의 정화조는 건축면적과 건폐율에 적용 시켜야 합니다. (기술부)

■ 집회시설은 그 구조가 피난, 안전상 특히 규제 강화되는바 건축법 시행령 부표 제 5항 근린공공시설의 마을공회당, 제 6항 제 1호의 교회 등의 대강당, 제 11항 업무시설인 청사, 사무실에 부속한 대 회의실 등도 집회장으로 간주하는지의 여부? (경남지부)

■ 건축법 제 2 장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키 문에 열거한 제 시설은 집회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건설부)

□ 건축법시행령

■ 옥외계단인 주계단을 건폐율 산정하는 건축면적에 포함시키는지요? (시민전화)

■ 건축면적에 산정해야 합니다.

■ 개축과 재축은 어떻게 구별됩니까? (시민전화)

■ 개축은 인위적으로 철거하여 종전규모 내에서 건축하는 것이고 재축은 자연적인 괴멸로 인하여 건축하는 것으로 구별하면 됩니다.

■ 상주공사감리를 두어야 하는 공사규모는? (시민전화)

■ 연면적 3,000m²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상주공사 감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 건축허가를 득하고 얼마있으면 건축허가가 취소되는지요? (시민전화)

■ 건축허가를 받고서 1년이상 착공치 않을시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나 1회에 한하여 3개월간 착공연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129조 단서규정의 “300m²마다 1개이상의 직통계단이 설치된 경우”에서 300m²마다 구획이 되어야 하는지요? (회원전화)

■ 구획은 필요없다고 판단됩니다.

■ 지하층을 아케이트로 사용할때도 용적률 산정시 제외되나요? (회원전화)

■ 용적률 산정시는 제외되고 바닥면적에는 산입됩니다.

■ 잔이음식점과 슈퍼마켓 바닥면적이 600m² 일때 근린생활시설로 볼수 있나요? (회원전화)

■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를 벗어난 판매시설로 분류됩니다.

■ 2개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의한 사선 제한 범위는? (회원전화)

■ 건축선으로부터 35m 이내로서 도로 반대편까지 거리의 2배이내 부분은 가장 넓은 도로측의 사선제한을 적용 받습니다.

□ 건축조례

■ 제 2종 미관지구내 73평 대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그 근거법조항은? (시민전화)

■ 가능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 180조 4항 및 서울시 건축조례부칙에 근거가 있습니다.

■ 지적상 5m도로에 연립주택의 건축이 가능합니까? (시민전화)

■ 현행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일정규모이상의 건물을 건축할때는 6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 풍치지구내 대지면적의 하한선은 얼마입니까? (회원전화)

■ 600m²입니다.

■ 다만 주거지역내 풍치지구는 200m²입니다.

■ 제 2종 미관지구내 대지 75평이고, 전면대지길이 12m일 경우 건축이 가능한지요? (회원전화)

■ 주위조건으로 대지의 추가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제 2종 미관지구내 70평 이상의 대지에는 건축할 수 있으며, 건물의 전면길이는 12m 이상으로 규제되어 있으나 대지의 조건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제 1종 미관지구내 125평 대지에 건축할 경우 가능합니까? (시민방문)

■ 미관지구로 도시계획시설 설치로 대지면적 부족할 경우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1/3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미관지구 지정이후에 도시계획결정, 변경으로 인하여 부적합

하게 된 경우라면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5/10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주차장법

문 주차장 확보는 신축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지요?

(시민전화)

답 건축물에 부설하는 주차장은 건축, 즉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등의 행위를 할 때는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문 기계식 주차장의 CAR-Lift 설치시 도로선에 접하여 설치가능합니까? (회원방문)

답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건축시는 법의 규정대로 대지안의 공지규정에 적합토록 설치하면 되겠지만 서울시는 주차장의 출입구는 주차시의 혼잡 및 도로상의 통파교통의 방해를 하지 않도록 건축선에서 6m 정도 후퇴하여 설치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문 옥외주차장을 주차장 소요면적 전체로 할수 있는지요? (시민방문)

답 가능합니다. 주차장 조례는 옥외주차장의 최소비율을 규정한 것입니다.

문 주차장의 옥외주차 비율은 얼마입니까? (시민전화)

답 옥외주차비율은 50% 이상이고, 건폐율이 50% (도심은 40~45%) 이하일 경우 옥외주차비율은 25% 이상입니다.

문 지하층 3개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각 층 바닥면적은 1,000 m²에 미달되고 3개층의 합계가 1,000 m² 이상인 경우 주차 출입구는 따로 두어야 하는지요? (회원방문)

답 지하 3개층의 출구, 입구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출구, 입구는 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기타규정

문 건축주가 특정회사에게 건축공사를 하도록 도급계약을 하였을 경우 공사시공자는 누가 되는지요? (시민방문)

답 도급을 받은자, 즉 수급인이 공사시공자가 됩니다.

문 17%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요? (시민전화)

답 함수값이 0.17인 각을 말하고 밑변 10에 높이 1.7을 말합니다.

문 건설업자 선정기준이 바뀌었다는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시민전화)

답 81. 12. 31자 건설업법이 개정되었으나 82. 7. 1부터 시행됩니다. 기준은 주거용 건물은 661 m², 비주거용 기타건물은 495m² 이상의 규모일때 건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82. 6. 30. 까지는 종전대로입니다.

문 지하주차장은 대피호로써 겸용이 가능한가요? (회원전화)

답 가능합니다.

문 학교용지로 지정된 대지에 건축이 가능한지요?

(시민전화)

답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용도이외의 건축은 불가능합니다.

문 면세창고가 300평 가량 있는데 그 내부에 냉동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시민전화)

답 개축이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 없이 공사할 수 있습니다.

문 서울시 연립주택의 최소 대지면적은 얼마입니까?

(시민전화)

답 20세대이상의 사업승인을 요하는 연립주택은 대지최소한도 면적이 2,000 m²이며 20세대 미만이라면 건축법에 의한 대지최소면적에 적합하면 됩니다.

□ 건축행정

문 공장 신축허가를 4년전 득하여 공사도중 형편에 의하여 완공하지 못하고 현상태에서 사용코자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시민방문)

(회원전화)

답 현상태로는 설계변경허가를 득한후 준공검사후 사용하는 방안과

가사용 승인허가를 득한후 사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문 입지심의 대상 건축물은 어느 것인지요? (회원전화)

답 아파트, 연립주택 등, 민영주택과 연면적 10,000 m² 이상 건물 및 11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 시행중에 있습니다.

문 용도변경시 소유권 서류를 첨부하는지요?

(시민전화)

답 건물에 관한 소유권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 주택건설조합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가. 구성인원은?

나. 종류는?

다. 절차는?

라. 조합 구성시 일반허가와 다른점은? (시민방문)

답 가. 무주택자 20인 이상입니다.

나. 개인조합과 직장조합이 있습니다.

다. 조합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라. 주택건설 사업등록자가 아닌자이면서 사업승인을 득할 수 있고 형질변경절차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승인을 득하여 대지 조성과 건축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문 제 4종 미관지구내 용도변경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시민전화)

답 미관심의는 필요없습니다.

문 건축허가에 필요한 전기도면은 어떤 것입니까?

(시민전화)

답 일반적으로 전기도면은 건축허가서에 첨부하지 않고 비상조명장치와 전기 설비 용량만 확인하고 있습니다.